

■ 목 차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소 이전 인사
- 정재형 변호사, 한태상공회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겸 이사로 선출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코스닥 상장회사의 소주 소재 중국 자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유치 자문
- 한국회사의 산동성 물류센터 설립 프로젝트 자문
- 한국벤처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통신사업 인수 자문
- 한국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 소재 제과제조회사 매각 자문
- 한국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강소성 소재 조선소의 선박 인수 자문
- 한국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판매 분쟁에 대한 소송 자문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베트남 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CB(전환사채) 인수 자문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 설비계약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국영기업 프놈펜 수도청(PPWSA)의 IPO 및 상장주관회사인 동양증권 캄보디아 자문
- 중국회사인 청풍과기풍험투자유한회사의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업체 M&A에 대한 자문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지주회사를 통한 러시아 현지법인 운영 관련 자문
-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석탄광산 및 항만 개발 프로젝트 실사 관련 자문
- 한국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SPC 청산 업무
- 한국의 방송통신장비회사를 대리하여 2012 APEC 행사 관련 시설 방송장비 공급 및 설치 계약 검토 및 자문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면허 제도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일본 샤프레를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기업에게 자회사 지분 양도 관련 M&A 자문
- 일본 OPT를 대리하여 한국 광고대행사 지분 인수 관련 M&A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방산 합작사업 자문
-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관련 현지 소송 대리

(해외업무 사례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 지분 인수 자문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미얀마 진출회사 OGM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해외업무 사례 - 태국)

- 한국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항공기 리스 갱신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CJ GAMES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 회사의 우호적 M&A 관련 자문
-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태국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 관련 자문
-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BOI 등록 회사의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호주)

- 광산 투자 관련 호주 현지 소송 대리

(해외업무 논란 - 중국)

- iPad 상표권 소송으로 본 중국의 상표권 보호 및 시사점

(해외업무 논란 - 베트남)

- 베트남 파산 절차 소개

(해외업무 논란 - 캄보디아)

-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

(해외업무 논란 - 일본)

- 日 상장회사 공시서류 허위기재, 협력한 제3자에게도 과징금 부과, 조사권한도 강화

(해외업무 논란 - 브라질·중남미)

-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2)

(해외업무 논란 - 필리핀)

- 필리핀 부동산 개발 절차의 각 단계별 개관 및 유의점

(해외업무 논란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해외업무 논란 - 태국)

- 고용 관계의 종료(정리 해고)

(최신 해외 정보 - 중국)

-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시장 개방 임박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매킨지의 베트남 보고서
-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TPP')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프놈펜 수도청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IPO 개시
- 캄보디아 고무농장 재배 225% 증가

(최신 해외정보 - 라오스)

- 올해 안에 WTO 가입 완료 예상
- 국영통신사 ETL(Enterprise of Telecommunications Lao) IPO 일정 연기
- 라오스 증권거래소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 도입 예정
- 국유재산법(Law on State Assets) 개정안 검토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 노동쿼터 비적용 대상 외국인-전문직 목록 확정 공포

-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 거래에 있어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금융기구 목록 공포
- 러시아민법 개정안 예고
- 러시아와 사이프러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현대자동차 트럭으로 일본 진출, 중국 하이얼은 가전 60종
- 한중 기업의 일본 시장 공세
- '인터넷·의료' 성장 활기, 상장 중견기업 랭킹 'NEXT 50'
- 올해도 일본 기업의 해외 M&A '증가' 전망
- 동북 지방에 태양광 패널 공장, 캐나다 최대 회사가 건설 -
- 후쿠시마·미야기에서 협상, 연내에 착공
- 일본 기업, 위안화 표시 사채 발행 확대, 미쓰이 물산은 60억 엔
- 캐나다와 EPA 협상, 천연가스 안정 확보

(최신 해외 정보 - 브라질)

- 브라질 부동산 임대시장 공급부족에 시달려
- 브라질 에너지 소비 최근 수년간 2배 증가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외국인의 CEO 임명을 금지하는 노동부령과 관련한 논란
- 공공사업목적 토지수용법 제정

(최신 해외 정보 - 미얀마)

- 미얀마 양곤 30년 도시개발 계획 추진 중

(최신 해외정보 - 태국)

- 민자유치법(PPP법) 개정 예정

(최신 해외정보 - 호주)

-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2012년 4월 2일 발효)
- 강화된 공시의무제도에 관한 가이드(Regulatory Guide 231)
- 호주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s Rent Tax)
- M&A 관련 과세제도 변경 예정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

- [새로운 조림 투자지 캄보디아] 사기 극성... 분수림 계약 방식으로 해야
- [인도네시아 중재 합의제 활용법] 중재 조항 꼼꼼하게 규정해 뒤야
- [러시아의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 생산량 대폭 늘려... 1200억 달러 투자
- [호주 정부의 '담배와의 전쟁'과 ISD] 강력한 담배 규제책, ISD에 막히나
-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이유]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포석'
- [잠에서 깨어난 미얀마] 정부 개혁 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활기
- [관광사업 장려하는 라오스] 외국인투자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 확대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소 이전 인사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본사, 코스모 (KT&G)서대문타워)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이번에 사무소를 확대, 이전하여 2012년 3월 19일(월)부터 서대문구 충정로 60에 위치한 '코스모(KT&G) 서대문타워' 8, 9, 10층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상공회의소 빌딩에서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날이 발전한 저희 지평지성은 변호사 규모 확대에 따라 사무소를 확장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평지성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고객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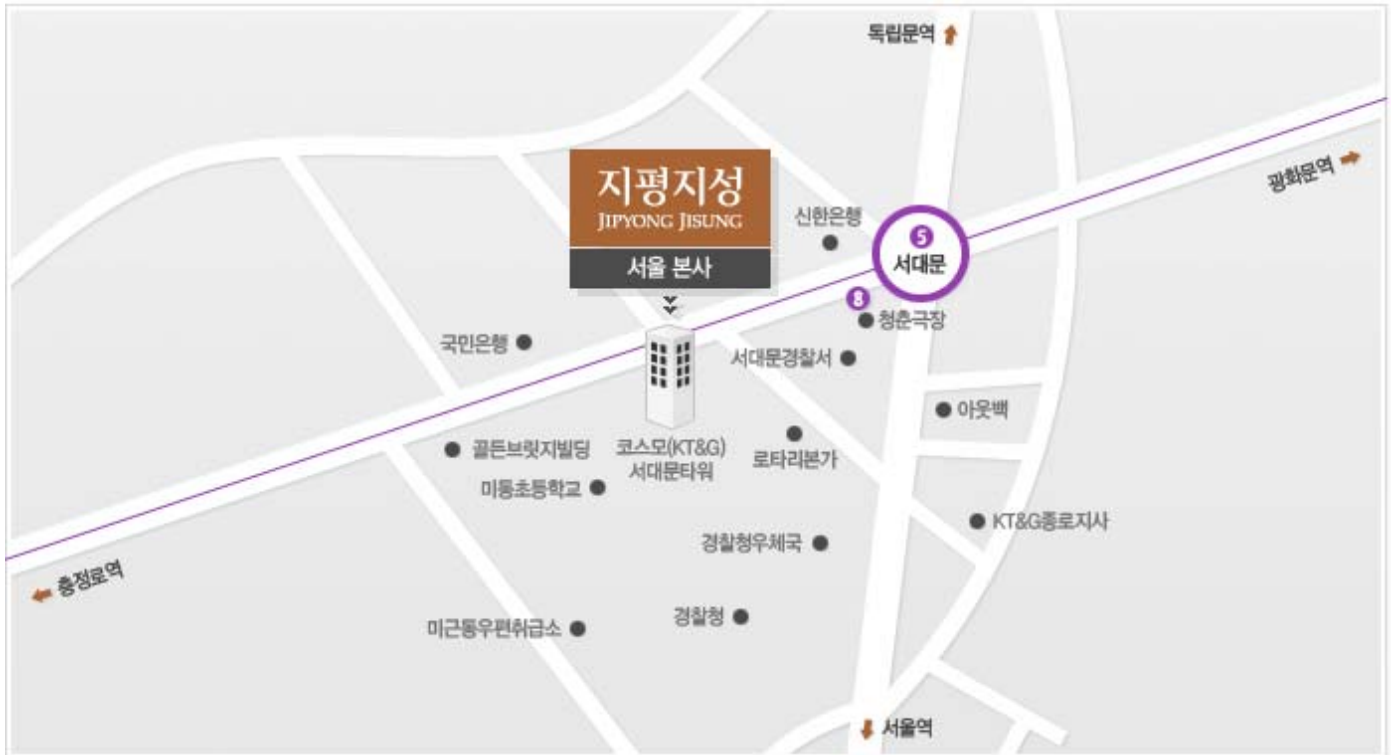
그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내용]

- 새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코스모(KT&G) 서대문타워 10층 (우) 120-020
- 대표 전화 : 02-6200-1600 (이전과 동일)
- 대표 팩스 : 02-6200-0800 (이전과 동일)

[약도]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정재형 변호사, 한태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겸 이사로 선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태국 사무소장인 정재형 변호사가 한태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겸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재형 변호사는 앞으로 회원들에게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태국연합외국상공회의소(JFCCT) 법률위원회의 한국 대표로서 투자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태국의 법제도 개선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외업무 사례

한국 코스닥 상장회사의 소주 소재 중국 자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유치 자문

지평지성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중국 소주에 100% 지분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신주발행 방식을 통한 중국 내자기업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형규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회사의 산동성 물류센터 설립 프로젝트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가 중국 산동성의 국영 운송사와 협력하여 산동성에 물류센터를 설립, 운영 업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춘원 변호사



정민정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벤처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통신사업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벤처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사천성 소재 통신사업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 소재 제과제조회사 매각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제과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에 소재한 제과제조회사의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강소성 소재 조선소의 선박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강소성에 소재한 조선소의 선박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흥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판매 분쟁에 대한 소송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판매 분쟁에 대한 소송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흥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베트남 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CB(전환사채)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베트남 상장사 유상증자 참여 및 CB(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상희 미국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포스코특수강 베트남 설비계약 자문

지평지성은 포스코특수강이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상공정(전기로)을 갖춘 100만 톤의 제품 생산능력을 갖춘 압연공장(형강/봉강라인) 건설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이전(2009년)부터 최근 설비계약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상희 미국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캄보디아 국영기업 프놈펜 수도청(PPWSA)의 IPO 및 상장주관회사인 동양증권 캄보디아 자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동양증권 캄보디아가 주관회사(Lead Manager)로서 업무를 진행한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 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PPWSA)의 Disclosure Document(대한민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가 제출되어 2011년 2월 24일자로 사전승인 받았고, 2011년 2월 29일부터 수요예측절차가 개시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 말에 청약을 개시하여 4월 중반에 매매거래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위 IPO업무에 주관회사인 동양증권 캄보디아를 대리하여 수 년에 걸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놈펜 수도청의 IPO는 캄보디아 자본시장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례인데, 특히 저희 지평지성은 국내 로펌 최초로 외국의 국영기업을 자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데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에 있어 쾌거를 이룬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PPWSA sets an IPO date](#) – The Phnom Penh Post(2012. 3. 1.)
- [한국 금융영토 확장..이번엔 캄보디아](#) – WOW 한국경제TV(2012. 3. 19.)
- [킬링필드 캄보디아에 '증시 한류'... 4월 18일 첫 상장 앞두고 열기](#) – 국민일보(2012. 3. 19.)
- ['한국 증권맨의 눈물, 캄보디아 증시 열었다'](#) – 머니투데이(2012. 3. 14.)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조원준 미국변호사
하노이 사무소장

홍진경 미국변호사

중국회사인 청풍과기풍험투자유한회사의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업체 M&A에 대한 자문

지평지성은 중국회사인 청풍과기풍험투자유한회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특별경제구역 내 부동산개발업체인 맨하탄유한공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법률실사자문을 의뢰받아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건은 중국기업이 해외기업을 M&A 함에 있어 저희 지평지성의 해외지사가 중국계 로펌과 여타 서양계 로펌을 제치고 자문을 제공한 사례로 캄보디아 국영기업 상장건과 더불어 저희 지평지성의 해외업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김옥림 중국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지주회사를 통한 러시아 현지법인 운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지주회사를 통한 러시아 현지법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석탄광산 및 항만 개발 프로젝트 실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극동 석탄광산 및 항만 개발 프로젝트 실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SPC 청산 업무

지평지성은 한국의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SPC 청산 업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의 방송통신장비회사를 대리하여 2012 APEC 행사 관련 시설 방송장비 공급 및 설치 계약 검토 및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의 방송통신장비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2012 APEC 관련 시설의 방송장비 공급 및 설치 계약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면허 제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건설면허 제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일본 샤프를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기업에게 자회사 지분 양도 관련 M&A 자문

지평지성은 일본 최대 규모의 여성 속옷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샤프가 산하 기업인 NLC Corp.의 전 지분을 카자흐스탄 기업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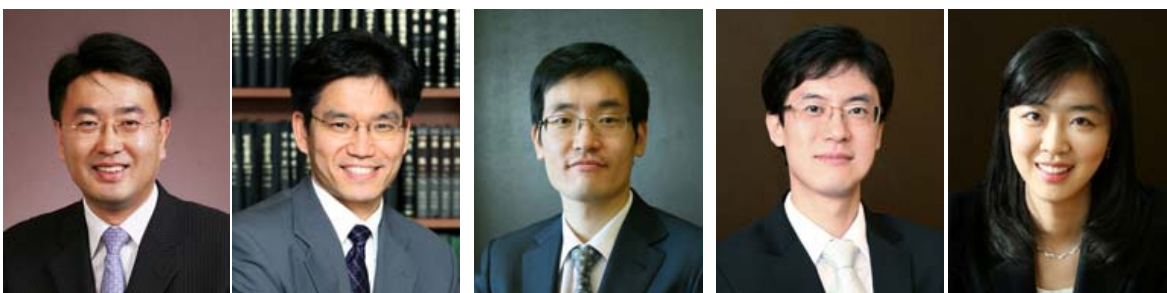


강성 대표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일본 OPT를 대리하여 한국 광고대행사 지분 인수 관련 M&A 자문

지평지성은 일본의 유명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OPT를 대리하여 한국의 광고대행회사의 지분 67%를 인수하는 M&A를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인도네시아 방산 합작사업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방산 합작사업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관련 현지 소송 대리

지평지성은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리를 위해 현지 로펌과 연계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말레이시아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 지분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 지분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미얀마 진출회사 OGM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6년부터 미얀마에서 광산업,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OGM과 2012년 2월 정식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미얀마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OGM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한국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항공기 리스 갱신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항공기 리스 갱신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태국의 재판관할 및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정철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CJ GAMES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 회사의 우호적 M&A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CJ GAMES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 회사의 우호적 M&A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김상준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태국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태국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정철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BOI 등록 회사의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BOI(태국투자청) 등록 회사의 기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김상준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해외업무 사례

광산 투자 관련 호주 현지 소송 대리

지평지성은 퀸스랜드주 Oil shale 광산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3년여의 소송에 관한 자문을 전략적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해외업무 논단

iPad 상표권 소송으로 본 중국의 상표권 보호 및 시사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부응 중국변호사)

1. 사건 배경

대만 유관그룹 산하의 유관전자 주식회사(이하 '대만유관')는 2000년에 여러 나라에 iPad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2001년에 유관그룹의 중국 자회사인 유관과학기술(심천) 유한회사(이하 '심천유관')는 중국 대륙에서 'IPAD' 및 'iPAD' 2개 상표(이하 '본건 iPad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미국 Apple Inc(이하 'Apple사')가 iPad 제품 런칭을 계획하던 시점에 유관그룹에서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말 대만유관은 10개 iPad 상표에 대한 권리 전부를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하 'IPADL')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 이전계약에 의하면 이전대상에는 중국 대륙에 등록된 본건 iPad 상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IPADL는 위 10개 iPad 상표에 대한 권리를 Apple사에 재차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심천유관은 본건 iPad 상표권은 위 양도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건 iPad 상표권은 심천유관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만유관은 이를 이전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Apple사는 본건 iPad 상표의 소유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심천유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Apple사와 IPADL는 2010년 4월에 심천유관을 상대로 소를(이하 '본건 소송') 제기하여 법원에 Apple사가 본건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심천유관은 원고에게 상표권 조사 비용, 변호사 위임 비용 등 400만 위엔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건 소송의 개요

가. 사건 쟁점

본건 소송의 쟁점은 심천유관이 본건 iPad 상표를 IPADL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만유관과 IPADL간에 체결한 상표이전계약에 심천유관이 보유한 본건 iPad 상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사건 진행 과정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심천중급법원')은 본건 소송을 접수한 후 2011년 12월에 1심 판결을 내렸는데 1심 판결에서는 Apple사와 IPADL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심천중급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상업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취득하고자 하면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했으며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상표 권리인과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상표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였지만 본건의 상표이전계약은 원고 IPADL와 대만유관 간에 체결한 것이고 대만유관과 심천유관 사이에는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청구는 사실과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pple사는 심천중급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광동고급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Apple사는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피고와 대만유관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있고, 1심은 절차적으로도 잘못이 있으며, 대만유관은 본건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므로 대만유관을 본건의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은 2012년 2월 29일에 심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3. 사건 평가

가. 본건 전망

위 사건 배경과 본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항소심에서 Apple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의 관점과 같이 본건 iPad 상표의 소유자는 심천유관인데 반해 IPADL는 대만유관과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록 심천유관은 대만유관의 계열사이지만 중국 법률에 의하면 2개 회사는 서로 독립된 법인이므로 대만유관에게는 본건 iPad 상표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Apple사는 대만유관과 심천유관 간에 표현대리, 간접대리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본건 소송의 영향

(1) 기타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 : 심천유관은 본건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미 हे주, 상해 등에서 Apple사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본건 iPad 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हे주 소송에서 심천유관은 이미 승소하였으며 हे주시 중급인민법원은 Apple사 판매상의 행위는 심천유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단, 상해 소송에서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은 본건 소송의 2심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소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만약 2심에서 Apple사가 패소한다면 상해 소송의 판결도 본건의 판결에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고, Apple사의 중국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상부서의 조사 및 처벌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불법 경영액의 3배 이하입니다. 모 유명 자문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제4분기부터 2011년 제3분기까지 Apple사의 iPad 태블릿 PC제품은 중국에서 362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3,000위엔의 단가에 따라 계산하면 Apple사의 매출액은 이미 108억 위엔에 달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여러 지방의 공상부서에서 Apple사의 iPad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Apple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iPad 제품의 판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상부서의 조사로 일부 매장에서는 이미 Apple사의 iPad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다. 본건 소송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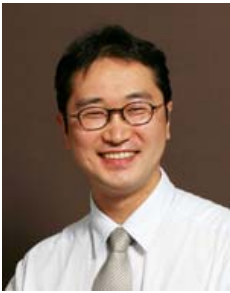
본건에서 Apple사의 가장 큰 실수는 본건 iPad 상표의 권리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표양도계약을 체결한 데 있으며 본건 iPad 상표권 취득 절차의 하자가 본건 소송의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각 국가별로 등록되고 권리가 부여되므로, 상표 사용자로서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동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적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미 등록되었다면 상표권자와 합의하여 상표사

용허가계약이나 상표이전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동 상표의 상표권자 등록 정보에 기재한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업무 논단

베트남 파산 절차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최근 베트남 투자계획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5,800개의 회사가 파산하였고, 11,500개의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1년말 기준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600,000개 중소기업 중 10%가 파산 또는 영업 중단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경기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기업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수 협상을 하던 회사에 대해 언제 파산 절차가 개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파산 절차 및 이로 인하여 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파산 절차는 파산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 근로자, 주주에게 있으며,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지급불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파산 개시 결정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은 파산 개시 또는 신청 기각 결정(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을 합니다.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3일간 공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및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3) 재산목록 작성

파산 개시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는 모든 재산 현황과 가치를 열거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채권 신고

파산 개시 결정의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및 채무자 명단 공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명단은 법원과 회사 본점에서 1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 명단 작성 또는 재산목록 작성 중 늦게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판사는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7) 회생 / 청산 결정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회생 결의가 통과되지 않거나, 회사가 적절한 회생계획을 수립·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 결정을 합니다.

2. 파산 절차가 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파산 신청이 제기된 것만으로 회사의 활동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30조). 그러나 재산의 은닉, 무담보 채무의 변제, 채권 포기·감면, 무담보 채무의 담보부 채무로의 전환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파산법 제31조). 다만 ① 재산의 담보 설정, 양도, 증여, 임대, ② 재산의 양

수, ③ 계약의 해제, ④ 차입, ⑤ 영업 활동에 따른 채무의 변제 및 급여 지급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협상중인 회사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사가 그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수 대상인 회사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합의한 지분양수도의 조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업무 논단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해 7월 개소식을 연 이후 첫 번째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국영기업 프놈펜 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의 Disclosure Document(대한민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가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근 수요예측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3월 29일에 주식 공모청약이 시작됩니다. 외국인이 위 청약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아래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등록 및 투자자번호 교부

외국인이 청약에 참가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자로 등록하고 투자자등록번호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인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나. 배정주식수에 대한 제한

캄보디아 증권발행규정은 청약시 외국인에게 배정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공모 주식의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는 공모 주식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투자를 위한 거래 통화

캄보디아는 외국환거래가 자유로운 국가로 미국 달러(USD)가 자국의 통화와 함께 상거래의 주요 거래 통화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캄보디아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발행 및 거래의 통화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여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통화를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3년간은 발행회사와 청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미국 달러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청약에 참가하는 등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캄보디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의 '리엘' 구입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기간 동안 리엘 통화의 환율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요예측 절차가 진행 중인 프놈펜 수도청의 경우, 수요예측 절차의 경우 '리엘'로만 수요예측증거금을 받고 있으며, 청약증거금 또한 '리엘'로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 논단

日 상장회사 공시서류 허위기재, 협력한 제3자에게도 과징금 부과, 조사권한도 강화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日 금융청은 이번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최근 일본에서 광학기기 회사인 올림푸스 등 상장 대기업의 공시서류 허위기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보완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올림푸스의 분식 회계에서 문제가 된 인수는 모두 4건으로, 동사는 2008년 영국 의료기기업체 자이러스 인수 당시 자문사에 수수료로 인수금액의 30%가 넘는 6억8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87억 엔)를 지급하고, 2006~2008년 사이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일본 국내 소규모 업체 3개사를 총 735억 엔에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통하여 손실을 은폐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상 문제 기업의 감사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감사법인과 공인회계사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허위기재에 협력한 제3자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는데, 日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행위의 방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개념을 금융상품거래법에 도입하여, 위법성을 알면서도 손실을 은폐시키는 분식 회계의 수법을 계획하거나 조연하고, 계좌개설과 자금이동을 도운 투자은행 관계자나 경영 컨설턴트 등의 개인 및 법인을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수령한 보수 등 경제적 이익금을 과징금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징금 조사에 비협조적인 제3자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의로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실태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조사협력을 거부하는 제3자에게 출두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자거래와 시장조작 등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출두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日 금융청은 이번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를 강력하게 막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일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업무 논단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2)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1. 단독법인과 합작법인의 차이점

합작법인이란 현지의 파트너와 합작계약(Contrato de Joint Venture)을 통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현지진출과 관련하여 단독법인 형태를 취하기에는 사업권, 생산시설, 유통망, 물류망, 현지정보,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에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계약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형태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당사자들의 역할 및 지분 결정, 경영권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회사의 기술 및 기업비밀이 공개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자금 수취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거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 회사에 대한 꼼꼼한 실사가 요구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계약인 만큼 브라질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브라질 독점규제법, 관련 인허가 절차, 구체적인 실사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현지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단독법인을 설립하고 브라질 현지경영인을 채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지의 선정

구체적인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형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철도와 노후된 도로가 주요 운송수단인 관계로 물류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지와 원재료 공급 경로 등을 입지 선정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정부 또는 주·시정부에서 토지, 조세, 금융 등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지원하거나 무상 장기 임대를 하기도 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기업에게 매입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설립절차

가. 유한책임회사(LTD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do Estado)에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정관 외에 외국투자자의 주소, 목적사업, 자본금 및 임원 등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Prova de existência legal, proof of legal existence)와 브라질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들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정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설립 이후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주식회사 (S.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가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의 규율을 받는 데에 반해, 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법(Lei das Sociedades Anônimas, 법률 제6,404호)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식회사(S.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총회(Assembléia de Fundação)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자본금의 10%를 현금으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시에는 10%의 현금납입이 필수임). 또한 모든 출자자들이 서명한 공증계약서(Escritura Pública) 또는 설립을 결의한 출자자총회 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당해 관할 주 상업등기소에登記해야 합니다.

다. 공통적인 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든 주식회사(S.A.)를 설립하든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송금 등록이 요구되는데, 송금 등록은 중앙은행 'SISBACEN'라는 전자 시스템에 회사 정보, 투자자 정보와 송금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정관 등을 당해 주 거래등기소에登記함으로써 완성되지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① 연방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ídica), ② 주 법인납세등록(Inscrição Estadual), ③ 시 법인납세등록(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취득해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위해서는 시청등록(Cadastro na Prefeitura Municipal)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국의 안전검사(Vistoria do Corpo de Bombeiros)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국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등록, 고용인 조합 (Sindicato Patronal) 등록 등의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경허가나 감독기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령 제약회사는 국가위생감시기관(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허가가 요구되고,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onselho Regional de Engenharia, Arquitetura e Agronomi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업무 논단

필리핀 부동산 개발 절차의 각 단계별 개관 및 유의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혜라 변호사)

1. 들어가며

필리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각종 사업인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한 후 투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살라맛 필리핀 이번 호에서는 필리핀의 부동산 개발사업 절차에 대해 각 단계별로 개관해 보고, 특히 각 단계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설립

필리핀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관과 내규를 작성하여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최소 5,000페소이나, 외국인이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인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이 미화 200,000달러 상당의 페소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는 통상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고, 각 이사는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이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작성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필리핀 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의 본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관에 차입, 제3자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현지

주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결권제한, 주식양도제한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관 및 내규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3. 토지권리 확보

토지권리 확보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필리핀 현지인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지소유 회사의 전체 이사의 60% 이상도 필리핀 현지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토지를 장기임대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 장기임대차는 50년을 상한으로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 장기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BOI(필리핀투자청), SBMA(수빅만관리청)나 CDC(클락개발공사)의 해당 정부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법인 구조 및 인허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회사가 토지를 직접 소유하려면, 그 회사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인이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토지소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 상위에 별도로 필리핀인과 외국인의 지분율이 60:40인 회사를 설립하여, 상위 회사를 통해 토지소유 회사의 지분을 60%까지 취득하여, 결국 토지소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64%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필리핀인이 60%의 지분을 보유하는 토지소유 회사와 별도로 외국인이 10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운영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소유 회사와 운영회사가 합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발관련 인허가는 운영회사가 직접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 회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출자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서, 토지소유 회사의 현지인 지분에 대해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 투자금의 송금

한국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필리핀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분 투자나 대부 투자에 대해 사전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향후 투자금(배당금, 대출금, 이자)의 한국 송금을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주로 금융기관)에서 폐소를 달러로 환전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 이익을 달러로 창출하거나 필리핀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환거래시장인 병행시장을 통해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투자 초기 단계에서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는 필리핀 회사가 부채: 자본금 비율(Debt to Equity ratio) 수준을 75: 25로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한국형 PF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업무 논단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파견근무)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국가들 대부분은 자국민에게만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상당히 폐쇄적인 토지 소유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온전한 의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설사 자국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1998년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거래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만 이행하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듯 폐쇄적인 토지 소유제도를 수립한 배경은 과거 장기간 식민통치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 때까지 약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다만,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위 기간 동안 토지제도를 규율한 규범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촌락 공동체에 적용되는 전통 토지법(Adat Law), 네덜란드 식민토지법(Dutch Colonial Agrarian Laws), 서구토지법(Western Civil Law)이 그것인데,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된 네덜란드 식민토지법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일정 부분 유리하게 대우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식민통치 기간 동안 토지를 비롯한 국가 자원을 수탈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1945년 독립 후 식민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독립헌법 제33조는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물, 천연자원 등 국가 전체에 중요한 산물로서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들은 국민의 번영과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헌법 규정만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 및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제도 전반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게 베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제정된 1960년 토지기준법은 제2조 이하에서 토지, 물, 공중 및 천연자원에 대해 국가는 (i) 이들의 목적 및 용도에 대해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ii) 이들과 법적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에게 토지에 관한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상당수의 토지가 중앙정부의 소유로 귀속되었고,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해 시한이 없고, 상속을 인정하는 온전한 의미의 소유권(Hak Milik; Right of Ownership)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와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토지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 특수 공법인에게도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토지 소유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만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할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상속 등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때 역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들이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여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며, 다만 국가는 일정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을 개인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인도네시아 토지기준법은 1960년 제정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인도네시아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째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대한민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도네시아 고유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세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만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업무 논단

고용 관계의 종료(정리 해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해고). 다만, 태국의 제반 법령에 따라 퇴직금과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1998년 노동보호법(2008년 수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일 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고용 기간	퇴직금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종 급여 30일 분
1년 이상 3년 미만	최종 급여 90일 분
3년 이상 6년 미만	최종 급여 180일 분
6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 급여 240일 분
10년 이상	최종 급여 300일 분

퇴직금은 급여에 의해 산정되며, 급여는 기본임금과 경제적 혜택 및 고용으로 인해 규칙적으로 지급 되는 유사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고용 관계 종료 사전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급여 지급

고용 계약의 기간이 없다면 고용 관계 종료 통지는 최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통지를 하고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 경우 9월 25일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를 갈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할 필요 없이 즉시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3. 미사용 휴가 수당

퇴직금 외에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체 휴가일 중 미사용 분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부당 해고

만약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동보호법에는 무엇이 부당 해고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당 해고 여부는 해고의 이유와 사실관계, 고용 계약, 업무 규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에 의해 차별 없이 감원하면 부당 해고가 되지 않을 것이고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1) 회사가 적자를 보고 특정 사업 부문을 폐업하면서 차별 없이 이 부분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2) 회사가 적자를 보고 특정 사업 부분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회사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경우
- 3) 회사가 적자를 보고 운송 부분을 폐업하고 새로 운송 부분을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경우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해고 시 급여 수준으로 복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은 통상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개월 분의 손해배상을 결정하나 근속 연수, 연령, 다른 직업의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른 보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1) 회사가 적자를 보고 감원을 했으나 추후 이들을 대체하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2) 회사가 동일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해고한 경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기계의 도입 또는 기계나 기술의 변경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보호법상 다음 절차를 따르면 해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1) 고용 관계 종료 최소 60일 전에 해고 일자, 해고 이유, 해고 근로자의 명단을 노동사무소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 2) 퇴직금 지급
- 3) 연속하여 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단, 360일 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신 해외정보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시장 개방 임박

중국 보험시장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조만간 제거되어 개방될 예정입니다. 2월 14일 중·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미경제 관계 강화 관련 연합상황설명>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교통사고강제보험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책임 한도내에서 배상을 하는 보험형태로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의무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중국 역내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모든 기동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보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바 외국보험회사는 인허가 신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 부주석 시진핑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 후 발표된 상기 공동 성명에서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 수정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으로 실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상업보험과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중국계 교통사고 의무보험회사와 부득이 협력하여 자동차상업보험상품을 판매하던 외국계보험회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판매망, IT 부족 그리고 인재양성, 자금투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해외정보

매킨지의 베트남 보고서

2012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매킨지의 베트남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총 60쪽의 내용을 개괄하는 도입부와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베트남 경제의 성공 요소, 베트남이 당면한 도전 과제들, 지속성장을 위한 네 가지 의제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드리는 제언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AMCHAM VIETNA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매킨지의 베트남 보고서 - AMCHAM VIETNAM 홈페이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TPP')

베트남을 위시한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의 출범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상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에는 베트남, 호주, 페루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매일경제 신문사가 주관한 포럼에서도 쉬밍치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TPP를 지렛대로 아·태 역내 무역정책은 물론이고 역내 각 국가들의 국내 정책에 대한 조율과 공조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베트남이 수출한 품목 중 1위였던 섬유/직물 제품의 총수출액은 140억 달러이었고 이 가운데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 71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발 부분 역시 2011년 수출분 65억 달러 중 대미수출은 20억 달러에 달했고, 핸드백 대미수출액도 7억 달러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무역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의제로 포함하고 있는 TPP 협상의 전개과정에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中·美석학 격돌 'TPP는 中 견제용'- 매일경제(2012. 2. 28.)

최신 해외정보

프놈펜 수도청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IPO 개시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 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PPWSA)은 캄보디아에서는 최초로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놈펜 수도청의 Disclosure Document (대한민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가 2011년 2월 24일자로 사전승인 되어 2011년 2월 29일부터 수요예측절차를 개시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수요예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모규모는 미화 약 2천만 달러이며, 주당 예정 공모가는 1달러에서 1.57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놈펜 수도청의 상장은 국영기업을 포함한 캄보디아 기업 중 처음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사례로서 캄보디아 자본시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놈펜 수도청의 IPO는 4월 중에 마무리되어 매매거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PPWSA sets an IPO date](#) - The Phnom Penh Post(2012. 3. 1.)

캄보디아 고무농장 재배 225% 증가

캄보디아에서 2011년도에 새로 시작된 고무플랜테이션 프로젝트는 20여 개에 달하여, 전년도 9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세계적인 고무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고무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는 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로부터 집중되고 있는데, 경제적 토지양여권(Economic Land Concession) 방식으로 정부토지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기사]

- [Rubber investments in Kingdom jump 255%](#) - The Phnom Penh Post(2012. 2. 22.)

최신 해외정보

올해 안에 WTO 가입 완료 예상

1997년에 WTO 가입신청을 한 라오스는 지난 15년간 WTO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곧 그 결실을 맺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과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연합과의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쌍무협정은 금년 중반쯤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빠르면 올해 말 WTO 가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영통신사 ETL(Enterprise of Telecommunications Lao) IPO 일정 연기

2011년 말에서 금년 초로 미루어졌던 ETL의 IPO 일정이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IPO 예정일은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ETL은 라오스의 4대 통신사 중 하나인데, 라오스국제상업은행인 BCEL과 라오스 전력청 산하의 EDL-Generation Public Company에 이어 라오스 증권거래소의 세 번째 상장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TL은 금번 IPO를 통해 정부소유지분의 3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증권거래소 인터넷으로 거래 가능한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 도입 예정

현재 라오스 증권거래소의 모든 증권거래는 팩스나 전화로 브로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시스템을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온라인 증권거래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법(Law on State Assets) 개정안 검토

라오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나 NGO에게 국유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의 가치측정 및 등기에 대한 내용 등 기존에 부족했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신 해외정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2012년 2월 1일 No.3-FZ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가입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률에 따라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 이익을 제안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는 러시아 형법상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법률의 제정은 러시아의 OECD 가입 조건이기도 합니다.

노동쿼터 비적용 대상 외국인-전문직 목록 확정 공포

러시아연방 보건사회개발부는 2012년 2월 8일 '2012년도 노동쿼터 비적용 대상 외국인-전문직 목록' 승인 명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동 명령은 2012년 2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명령에 따르면 2012년 노동허가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직업군은 41개군으로, 이 중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프로젝트 시니어 엔지니어, 지점/대표사무소 대표, 기업의 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 거래에 있어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금융기구 목록 공포

2012년 2월 3일 No.119-R 러시아연방정부 고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 거래에 있어 사전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금융기구 목록'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절차법과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정부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나, 동 고시에 명시된 특정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12개의 국제금융기구가 선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IBRD, EBRD,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The 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European Investment Bank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민법 개정안 예고

2012년 2월 7일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민법 개정 법률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있었던 개정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도산과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 및 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 법인 관련 규정,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관련 규정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운영이 제한되었던 은행계좌 질권, 특히 에스크로우 제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사이프러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2012년 2월 28일 No.9-FZ '러시아와 사이프러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의정서에서는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에 100,000달러 이상을 회사 자본금으로 출자한 자가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 5% 세율로 원천징수 하던 것에서 100,000유로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최신 해외정보

현대자동차 트럭으로 일본 진출, 중국 하이얼은 가전 60종 한중 기업의 일본 시장 공세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2012년에 대형 트레일러의 판매를 시작으로 트럭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9년에 철수시켰던 승용차 판매도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얼은 일본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새롭게 60기종 이상 판매하여, 일본 시장 매출을 5배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한·중기업의 진출로 일본 국내 기업은 새로운 대응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의료' 성장 활기, 상장 중견기업 랭킹 'NEXT 50'

닛케이산업신문과 일본경제신문 디지털미디어, 닛케이 리서치가 공동으로 매출액 500억 엔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 효율성과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한 'NEXT 50' 상장 중견기업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일본 최대 요리 레시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쿡패드가 차지하였습니다. 상위에는 인터넷과 의료 관련 기업이 눈에 띄고, 이 외에도 기존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기업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1위부터 3위는 쿡패드 등 인터넷 관련이 차지하였습니다. 의료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무기로 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10위를 차지한 마니는 수술용 봉합 바늘, 13위인 나카니시는 치과용 드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기업으로 해외매출액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의료와 인터넷의 융합 영역에서는 엠스리(7위)가, 일본 의사의 70%인 21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제약회사의 영업 행태까지 바꾸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41%로 고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기상정보 웹저 뉴스(16위), 자동차 판매 관련 아사히(20위) 등, 기존 비즈니스를 쇄신한 기업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일본 기업의 해외 M&A '증가' 전망

일본기업의 해외 M&A는 올해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레코프 데이터가 기업과 중개회사 등 M&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7%가 2012년에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신흥국 기업을 인수할 때라는 응답은 67%에 달했습니다. 의약품과 식료품, 소매 등 내수 업종의 해외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의욕도 강하여 1월 해외 M&A 금액은 1월 비교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유례없는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공격적인 M&A에 나서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동북 지방에 태양광 패널 공장, 캐나다 최대 회사가 건설 - 후쿠시마·미야기에서 협상, 연내에 착공

캐나다의 태양전지 최대 회사인 캐네디언 솔라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곳의 지자체와 입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빠르면 연내에 착공하여 2013년 봄 이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매입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생산능력이 15만 KWh인 태양광 발전 패널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동북 지역에 외국 자본이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 위안화 표시 사채 발행 확대, 미쓰이 물산은 60억 엔

일본 상장기업이 중국 위안화 표시로 사채를 발행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사와 리스 회사가 연이어 단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에 미쓰이 물산도 5억 위안화(약 60억 엔) 정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비즈니스의 확대에 대응하여 현지 통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화 표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외화 표시 부채도 늘림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작년 오릭스가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홍콩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사채를 발행한 것에 이어, 도쿄 센츄리 리스와 미쓰비시 UFJ 리스도 발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에는 미쓰비시 상사가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단기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미쓰이 물산이 발행하는 5년짜리는 일본 기업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사채로서는 가장 깁니다.

캐나다와 EPA 협상, 천연가스 안정 확보

일본과 캐나다 정부는 빠르면 올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캐나다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신형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동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 EPA를 먼저 추진하여 TPP 관련 협의도 가속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핵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3월 26, 27일을 전후로 캐나다의 하버 총리가 방일하여, 노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1월 하순에 EPA에 관한 공동 연구를 마친 상태로 3월 상순에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화력 발전의 원료인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천연가스 수출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중장기 수입처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신 해외정보

브라질 부동산 임대시장 공급부족에 시달려

브라질의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부동산 임대 가격이 오르고 공실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우데자네이루의 주요 지역 경우 뉴욕 미드타운 지역의 임대료(62.6달러/m²)보다 높은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69.4달러/m²)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용 점포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기존 쇼핑센터의 공실률이 근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쇼핑센터의 계약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공급 부족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지를 구하려는 성향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 소비 최근 수년간 2배 증가

브라질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11.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브라질 인구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화나 생활수준 향상의 척도가 되므로, 위와 같은 통계는 브라질의 국내 산업성장과 인구의 구매력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전력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브라질이 GDP 수준에서는 영국을 따라잡았지만, 전력소비량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브라질의 높은 전기료 수준이 전기 사용량의 확대를 막고 있는데, 높은 전기료는 브라질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성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신 해외정보

외국인의 CEO 임명을 금지하는 노동부령과 관련한 논란

2012년 2월 29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이 법인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령(Decree No. 40 of 2012)에 서명하고, 곧이어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은 외국인이 CEO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외국인이 담당할 수 없는 직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CEO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법인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 CEO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장관령이 공표되자마자 외국인과 내국인 구별할 것 없이 많은 기업인들에 의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본 장관령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용어의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즉, Muhaimin Iskandar 노동부 장관은 본 장관령에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규정된 CEO라는 직책은 반드시 최고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부는 CEO를 회사의 인사 및 총무 담당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부 장관의 설명으로, 일단 본 노동부 장관령의 CEO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된 법인의 중요 직책은 인도네시아 국민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도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장관령의 목표도 분명 법인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어떠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공사업목적 토지수용법 제정

2011년 12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토지수용법(Land Acquisition Law)을 통과시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된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 종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통령령이 존재하였고, 공공사업자는 위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위 법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령은 공공용지 취득절차 전반을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토지소유자들의 법적 구제수단도 미흡하여 신속한 공공사업의 진행을 뒷받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각지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지지부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발목 잡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나마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우선 형식상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승격되어 법적 안정성과 사업진행의 확실성을 법 체계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보다 상세하게 사업진행절차를 규정하고, 각 사업단계 및 총 사업절차에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법률은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절차를 단계화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제기 및 권리실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법률의 시행법령(Implementation Regulation)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내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시급한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일부 시민단체는 본 법률에 대해 토착민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리보다는 정부 및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길 바쁜 인도네시아 정부를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최신 해외정보

미얀마 양곤 30년 도시개발 계획 추진 중

2005년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로 옮겨가기 전까지 미얀마 수도였던 양곤은 여전히 미얀마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2011년 12월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양곤시를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에 일본 및 싱가포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상수도 공급 능력이 62%에 불과하고, 오페수의 처리능력도 10~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과 열악한 도로상황 등이 양곤 도시개발 계획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건시설 및 전력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 운영시스템, 상하수도 처리시스템, 수도관 교체, 기타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 있어서 많은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해외정보

민자유치법(PPP법) 개정 예정

태국의 1992년 민자유치법(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tate Undertaking, 일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이 ① 정부의 심의 및 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 ②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Build-Own-Operate(BOO) 또는 턴키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③ 프로젝트 평가 기준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위험 배분이나 민간의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담당 정부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절차, 상충하는 이해의 조정, 더 넓은 PPP 개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PPP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은 한국의 민자유치법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태국의 신정부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이 법의 개정이 태국의 민자유치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해외정보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2012년 4월 2일 발효)

이 법안의 골자는 호주의 탄소 배출권 가격(Carbon price)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Durban 기후변화협약에서 3개의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 COP 18에서 교토의정서(선진국의 탄소 배출 감소 의무, 2008-2012)의 효력을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의함(다만, 기존 Annex I 국가들 중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의 불참이 예상됨)
- 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합하는 하나의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AWG-DP를 창설하고, 2015년까지 이를 결의하기로 함
- 연간 USD100 billion의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를 2020년까지 조성하여 개도국에 전달함

이러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호주의 청정에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희석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화된 공시의무제도에 관한 가이드(Regulatory Guide 231)

호주증권·투자감독원(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사회기반시설 투자기업(상장/비상장 모두 포함)의 강화된 공시의무제도에 관한 가이드(Regulatory Guide 231)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li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GULATORY GUIDE 231]** [Infrastructure entities : Improving disclosure for retail investors](#)

호주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s Rent Tax)

철광석과 석탄 채광에 부과되는 Mining Tax인 호주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s Rent Tax) 법안이 호주 의회를 2012년 3월 마지막 주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A 관련 과세제도 변경 예정

호주연방정부는 기업 인수·합병시 인수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취득기업의 세금 공제액을 제한하는 소급 법안을 도입할 의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림 투자지 캄보디아]

No. 843 | 2012. 2. 1.

사기 극성... 분수림 계약 방식으로 해야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2012년 1월 새해 벽두에 SK임업이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에 총 150헥타르 규모의 시험림과 황폐지 복구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보다 훨씬 앞선 2009년 10월 22일 산림청은 캄보디아 산림청과 조림 투자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조림 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해각서를 근거로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나라에 제주도보다 넓은 20만 헥타르의 조림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한국의 한화무역은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계약을 체결, 캄보디아 크라체 주에 있는 3만4000헥타르의 조림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 국내의 우수 목재 및 제지 관련 회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조림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림업은 기존에 주로 카사바·자트로파 등 바이오 에너지 조림이나 최근 중국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고무 생산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나무 생산이 주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목·제재목·제지목 등 산업 조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캄보디아에서의 조림 산업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산림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제지목, 목재 원료 등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조림 사업 개발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100헥타르의 해외 조림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법을 통해 저리 용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조림 투자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산림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적 토지 양여권 수여 방식 이외에 분수림 계약 방식이라는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분수림 계약 방식은 정부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산림을 조성, 생산해 그 수익을 투자자와 정부가 분배하는 수익 분배 계약(profit sharing contract) 방식이다. 한화무역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조림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도 분수림 계약 방식의 투자다. 현재 한화무역과 함께 일본의 국영기업인 오지페이퍼도 이 방식을 통해 조림지 확보에 나섰다.

분수림 계약 방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의 조림지 확보 방식인 경제적 토지 양여권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조림지를 확보, 운영할 수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제적 토지 양여권은 쉽게 말해 정부로부터 토지만 임대받는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양여비를 지급받는 것 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제적 토지 양여권 취득은 중앙정부의 감시 권한이 덜 미치는 지방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어 그 절차가 불투명하고 이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 및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분수림 계약 방식은 산림청이 사업 수익의 이해당사자이므로 정부의 관심이 높고 정부의 협조도 보다 적극적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조림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수림 계약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3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재 합의제 활용법]

No. 844 | 2012. 2. 8.

중재 조항 꼼꼼하게 규정해 줘야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2012년 각 기업들의 신년 사업 계획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등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고비용 소송 구조와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중재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사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계약 집행 부문(Enforcing Contracts)에서 전체 평가 대상 183개국 중 156위를 차지했다. 소송비용(Cost of Clai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커 전체 소송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절차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낮거나 논점이 단순한 소위 '쉬운' 사건도 10회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법원에 출석한 변호사들은 최소한 3~4시간을 자기 사건을 기다리느라 재판정 안팎에서 보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변호사들은 소가에 비해 높은 수임료를 고객에게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해결 등을 장점으로 하는 중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도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81년부터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해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재판정은 외국에서 내려진 것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내려진 것을 불문하고 뉴욕협약 및 국내 법률에 의거해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법원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재판정의 효력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중재제도의 안정성에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뉴욕협약에서도 중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원의 일부 판결은 위와 같은 잣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중재합의 내지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카라 보다스(Karaha Bodas Company)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 등을 상대로 제네바에서 받은 중재판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고비용 소송 구조와 인도네시아 법원의 중재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태도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일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 중재합의를 여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재 조항을 작성할 때 표준중재 조항 정도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가 중재합의 내지 판정을 부정할 때를 대비해 기존 사례를 반영한 좀 더 자세한 중재 조항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가 국영회사인지 또는 민영회사인지, 계약의 성격 내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수준 등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국영회사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재 조항 작성에 한층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4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

No. 845 | 2012. 2. 15.

생산량 대폭 늘려... 1200억 달러 투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석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석탄 소비량은 1억 톤 정도로 세계 3위 수입국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석탄 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공급이 석탄 수요를 따르지 못해 2013년부터 공급량이 약 60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석탄은 확인 매장량만 1570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2011년 소련 해체 후 석탄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다. 총생산량은 3억3610만 톤으로 2010년 대비 4% 증가했다. 수출도 2010년 대비 3.1% 증가한 1억2000만 톤을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1월 24일 '2030년 석탄 산업 장기 발전 프로그램(이하 석탄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8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행 연방 사업, 분야별 전략, 석탄 산업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기존 결정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은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30년으로 구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 석탄 생산은 2011년 대비 2030년까지 30%(4억3000만 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 탄광은 노천 탄광 82개, 일반 탄광 64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중 석탄 산업 총투자액은 3조7000억 루블(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연방 예산은 2518억 루블(약 8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석탄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는 운송비용 절감 및 석탄 공급 효율성 제고다. 연방 정부가 투자할 예산 중 1995억 루블은 교통 인프라(철도·항만)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석탄 항만 터미널의 처리량이 현재 6900만 톤 수준에서 1억90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에는 평균 운송 거리가 1.2배 정도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생산된 석탄은 현지에서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의 석탄 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대부분은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즉, 철도 건설에 사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쿠즈바스~극동 철도프로젝트에는 1800억~20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4000만~5000만 톤의 물동량을 추가로 운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가 예상한 석탄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석탄 수요가 앞으로 10~15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1~2% 정도가 될 것이므로 국내 수요가 성장하지 않는한 정부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2011년 상반기에만 해외 석탄 광구에 36억5800만 달러(약 4조1200억 원)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전·철강회사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투자 부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률·제도적인 문제보다 운송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석탄 내수 증대와 교통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러시아 석탄 사업 개발에 참여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5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담배와의 전쟁'과 ISD]

No. 846 | 2012. 2. 22.

강력한 담배 규제책, ISD에 막히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주영 호주변호사)

호주 정부는 2006년부터 담배 규제 정책을 도입,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담뱃갑에 직설적인 경고 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사진들을 총천연색으로 함께 삽입하도록 입법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통과시켜 2012년 12월부터 호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을 무늬 없는 짙은 갈색 포장지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통일하고 규격 서체로 담배 제조회사의 이름과 제품명만 표기하여 담배 제조회사의 로고와 그 어떤 광고 문구도 넣지 못하도록 담뱃갑 포장을 의무화했다.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법이 도입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호주가 처음인데, 강력한 담배 규제책을 검토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호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력을 가진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연이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 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임페리얼 토바코, 재팬 토바코 및 필립 모리스는 담뱃갑에 회사의 상표나 고유한 색깔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호주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기업의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호주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호주 하이 코트(High Court:헌법, 국제협약 등에 관한 원심 법원 및 주 법의 상고심 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들은 담배 포장법에 따른 담뱃갑의 유통이 호주의 흡연 인구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귀중한 고유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국내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에 앞서 말보로와 알파인 등의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필립 모리스는 필립 모리스 호주(Philip Morris Australia)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에 소재하는 필립 모리스 아시아(Philip Morris Asia)를 통해 담배포장법은 호주가 1993년 홍콩과 맺은 양자 투자 협정에 위반된다고 호주 정부에 국제중재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04년 발효된 미국-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호주 정부의 반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이하, ISD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필립 모리스는 홍콩 자회사를 통해 홍콩-호주 간에 19여 년 전에 비준된 양자 투자 협정의 ISD 조항을 언급하며 호주 정부에 의해 필립 모리스의 지식재산권이 몰수당했으며 투자에 비합리적인 방해 등을 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중재 신청을 낸 것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호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정책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과의 법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필립 모리스의 호주 정부에 대한 중재 신청은 ISD 조항이 국가의 공공정책 도입 및 그러한 정책의 순탄한 실행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2011년 4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추후 호주 정부가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할 무역협정에서는 ISD 조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2011년 5월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한국과 호주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시 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6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인 이유]

No. 847 | 2012. 2. 29.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포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파트너변호사 · 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

지난 1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의미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곧 개시된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이제야 시작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간 협상은 벌써 시작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되어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므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FTA를 통해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FTA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까. 중국이 한국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관세율은 평균 9.7%대로 높으며 관세율이 15~20%에 해당하는 품목도 적지 않다. 따라서 FTA 체결 시 관세 장벽의 철폐로 중국보다 한국이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관세 장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한국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당연히 높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외국자본의 투자

진입 단계, 외자 진출 후 운영 단계, 투자 철수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제한이 존재한다. 관세 장벽보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FTA 체결 시 기대되는 이익은 관세 장벽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만·홍콩·마카오 등 사실상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은 2008년에 체결한 뉴질랜드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중국 언론의 이 대통령 방중과 FTA 협상 개시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중 FTA 체결로 한중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길 희망하는 논조가 역력하다. 한중 FTA 체결이 힘든 점을 설명하면서 '민감 영역' 혹은 '민감 부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 측에서 보면 농업 분야를 의미한다. 귀지진릉바오(國際金融報)와 같은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의 농산물 개방과 관세 인하는 한국 농민의 거센 반대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 부분'이니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협상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측의 태도는 의외다. 중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문이 농업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중 FTA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이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국제적·정치적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보다 중국이 먼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잘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면서 중국에 정치적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어야 한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7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미얀마]

No. 848 | 2012. 3. 7.

정부 개혁 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활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파트너변호사)

미얀마는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 석유, 구리,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등의 지하자원과 루비, 사파이어 등의 보석류, 티크 등 산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6천만에 이르는 인구, 3,000km에 달하는 해안선,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과 접경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미얀마의 경제적 가치를 대변해 준다.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이 미루어져 왔다. 미국은 1997년 미국인의 미얀마 자원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고, 2003년에는 미얀마와의 자금교류와 미얀마 생산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연합도 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을 제한한데 이어, 2008년에는 미얀마인 명의의 자산을 동결했다.

최근 이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1월에 실시된 20년만의 미얀마 총선을 계기로 들어선 민간정부는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에까지 다양한 개혁정책을 내 놓고 있다. 각종 규제의 완화,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치 여사로 대표되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정책에 조응하여 2011년

말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이 50년만에 이루어졌다. 클린턴 방문 이후 미국은 미얀마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유럽의 각국 외무장관급 인사들도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요즘 미얀마에는 각국에서 사업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호텔을 잡기도 어렵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미얀마를 찾고 있어 요즘 코트라 양곤 무역관에서는 미리 약속을 잡아도 담당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가 해소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 상태인 미얀마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동남아 지역들에서 이미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여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얀마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임가공업체들이 미얀마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제재를 겪다 보니 미얀마에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다. 우선, 도로, 전력, 항만,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업입지를 결정할 때 전력, 물류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인프라 부족이 투자의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제약 요소이다. 정부 차원의 노동력 육성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도 시급하다. 현 정부 들어서 노동조합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고, 경제특구법도 제정되는 등 여러 제도적인 개선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198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회사법도 1947년에 제정된 것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법의 경우 개정이 임박해 있지만 그 최종 내용은 여전히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복잡한 환율제도도 큰 장애요인이다. 최근 IMF의 도움을 받아 미얀마 정부가 환율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환전제도에도 많은 진전을 가져왔지만, 기존의 이중환율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만 할 중요한 숙제이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는 매우 매력적인 잠재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미얀마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기반시설, 법제도적 측면, 산업구조 등을 잘 따져보고, 불투명한 법제도나 행정절차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8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장려하는 라오스]

No. 849 | 2012. 3. 14.

외국인투자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 확대



(법무법인 지평지성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라오스 사무소장)

라오스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유명한데, 이곳은 2008년 한 외국 언론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위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물론 루앙프라방뿐만 아니라 라오스는 방비엥(Vang Vieng)과 루앙남타(Luang Namtha) 등 제각기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1980년대 후반쯤 공식적으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후 라오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오스 관광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라오스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대략 7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는 아직도 낯선 나라다. 2010년 말 한국거래소가 합작으로 라오스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에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한상기업 코라오그룹의 코라오홀딩스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한국에서도 라오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근 국가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라오스는 아직도 미지의 국가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었고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하노이를 반드시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경유 시간이 워낙 길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라오스를 쉽게 오가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 9월 한국과 라오스 간에 항공자유화협정이 타결됐고, 그 결과 한국계 항공사인 진에어가 2011년 12월 21일 처음으로 한국~라오스 직항 노선을 개설했다. 한국~라오스 왕복 항공편은 현재 1주일에 두 번 운항되고 있는데, 예전에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감수해야 했던 시간 소모와 번거로움이 해소되면서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과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재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직항 노선 개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도 관광사업을 검토해볼 만하다. 라오스 관광산업은 라오스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라오스의 우선 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다. 라오스 정부도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관광사업이 단독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합작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관광 사업은 라오스 현지인들을 위해 보존해 둔 사업 분야이긴 한데,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리조트·호텔·레스토랑 및 관광 안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리조트·호텔·레스토랑은 100% 외국인 단독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관광 안내 사업은 관광 관련법상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호텔과 달리 게스트하우스와 소규모의 숙박업소는 라오스 현지인들을 위해 보존돼 있는 특정 관광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 [한경 비즈니스 제849호 PDF 다운로드](#)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